

의안
번호

454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
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04. 16.
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양순임의원 외 16명

나. 의안번호 : 제454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3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04. 10.

2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조례 제명을 “국가유공자”에서 “국가유공자 등”으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보훈보상대상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까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,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안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정의(안 제2조)
- 다. 우선주차구역의 이용(안 제6조)
- 라. 위반차량 조치(안 제7조)
- 마. 사용료 감면규정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4. 3. ~ 2025. 4. 8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을 “국가유공자”에서 “국가유공자 등”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
- 국가유공자의 범위를,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로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보상대상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까지 조례를 적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“국가유공자”에서 “국가유공자 등”으로 사업대상자 확대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**국가유공자 등**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함.

<현 행>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<개정안>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○ 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7조 일괄 정비

조례 대상자 확대에 따라 “국가유공자”를 “국가유공자 등”으로 일괄 정비하고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성북구민”으로 하는 등 어문을 명확하게 정비한 것임.

○ 안 제2조(정의) 정비

“국가유공자 등”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임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정의함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국가유공자”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국가유공자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다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라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

○ 안 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신설

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 이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도록 하고, 구청장은 필요시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우선주차구역 운영을 위한 이용자 관리 규정을 둠.

○ 안 제8조(사용료 감면규정) 정비

시설물을 사용(이용)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조문이나 현행 “시설물 감면규정”으로 되어 있어 “사용료 감면규정”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여 시설물 이용시 감면의 대상이 사용료임을 명확히 함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신 설> 제7조(시설물 감면규정) 구청장은 성북구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.	제8조(사용료 감면규정) 구청장은 시설물을 사용(이용)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. <삭 제>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상위법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